
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0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6.

발 의 자 : 강대식 · 윤재옥 · 김태규
최은석 · 이만희 · 강선영
김장겸 · 김종양 · 박상웅
백종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「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」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,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.

이에 「지역보건법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, 병원선 또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과 같이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

안」(의안번호 제20002호) 및 「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00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보건의료원”을 “보건의료원 및 병원선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검진기관의 지정) ①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에 따른 보건소(<u>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</u>)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.	제14조(검진기관의 지정) ① ---- ----- ----- ----- <u>보건의료원 및 병원</u> <u>선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